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5. 3 선고 2021가단172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3. 22.

판 결 선 고 2022. 5. 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21. 2. 2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,627,8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5,627,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C을 상대로 ‘17,480,474원 및 그 중 14,492,332원에 대하여 2019. 12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지급명령(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26696호)을 신청하였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1. 29. 확정되었으며, 2021. 7. 16. 현재 C은 원고에게 16,955,107원 및 그 중 금 14,492,332원에 대하여 2021. 7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E은 2021. 2. 26. 사망하였는데,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F, C, G, H, I이 있고,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등이 있다. 그런데 C은 2021. 2. 26.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/13 지분을 포기하고,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,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인 2009. 6. 18. 설정된 J조합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인 2021. 3. 22. 말소되었는데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516,581,200원이고, 피담보채무의 합계액은 415,000,000원이며, C의 지분은 2/13이므로, 15,627,876원[(=516,581,200원-415,000,000)×2/13]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차진석

별지